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포츠 안전교육 활성화 및 수영장 확충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제6조제1항제7호 신설)	3
2.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수영장 추가(제7조제1항)	8
3. 체육시설 이용 요청시 협조 의무 부과(제7조제3항 신설) ...	12
4. 개정안 부칙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제6조제1항제7호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장의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u>
<u>7. ~ 10.</u> (생략)	<u>8. ~ 11.</u>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교안전중앙공제회의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학교¹⁾에서 총 211,650명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학교로 구성됨.

이 중 스포츠활동²⁾은 118,479명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학교안전사고 통계(사고당시활동별)]

구분	학습 활동	스포츠 활동	일상 활동	이동	싸움	기타	합계
인원(명)	14,898	118,479	43,789	29,423	63	4,998	211,650
비율(%)	7	56	20.7	13.9	0	2.3	100

자료 : 학교안전중앙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체육 수업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사고시간별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	수업시간		점심 시간	휴식/ 청소	학교 행사**	특별 활동***	등하 교	석식 /기숙	기타	계
	체육	체육외*								
2023 년	25,300 (41.0%)	6,681 (10.8%)	9,704 (15.7%)	10,420 (16.9%)	648 (1.1%)	3,318 (5.4%)	2,686 (4.4%)	-	2,933 (4.7%)	61,690 (100%)
2022 년	19,426 (40.2%)	5,423 (11.2%)	9,542 (19.7%)	6,306 (13.0%)	2,456 (5.1%)	1,377 (2.9%)	2,317 (4.8%)	207 (0.4%)	1,316 (2.7%)	48,370 (100.0%)
2021 년	9,965 (43.9%)	3,219 (14.2%)	3,439 (15.1%)	2,501 (11.0%)	491 (2.2%)	888 (3.9%)	1,292 (5.7%)	129 (0.6%)	784 (3.4%)	22,708 (100.0%)
2020 년	3,028 (36.2%)	1,723 (20.6%)	1,293 (15.5%)	974 (11.6%)	186 (2.2%)	331 (4.0%)	526 (6.3%)	83 (1.0%)	224 (2.7%)	8,368 (100.0%)
2019 년	13,930 (33.0%)	6,303 (14.9%)	9,725 (23.0%)	6,158 (14.6%)	2,460 (5.8%)	1,528 (3.6%)	1,891 (4.5%)	232 (0.5%)	-	42,227 (100.0%)

자료 : 202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2025. 3. 1.)

* 체육외 수업시간 : 일반수업, 과학/실험, 미술·음악, 조회/종례, 자율학습, 방과후교실 등

** 학교행사 : 체육대회, 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경기출전 중, 문예행사 등

*** 특별활동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운동부활동, 특별활동/기타

2) 구기, 라켓 스포츠, 타겟형 스포츠, 바퀴달린 무동력 스포츠, 육상, 무도, 수중, 설상·빙상, 체조·무용·매트운동, 기타 스포츠활동으로 구성됨.

□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부상을 넘어 학생의 정서적 외상, 학부모와의 갈등, 교육활동 중단, 교사의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등 다양한 문제로 확산되며,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³⁾, 학교에서의 스포츠활동시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학교 스포츠클럽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고,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활동 수업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에 관한 태도가 높았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활동 수업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요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⁴⁾, 학교에서의 스포츠 안전교육 실시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안전교육을 실시 중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⁵⁾, 「학교안전

3) 최진주, 학교 체육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과 통섭 2025 제8권 제4호, p23

4) 엄진호,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수업 안전교육 실시현황과 학생인식 연구, 2019.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45~46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실제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체육활동을 포함한 안전사고 유형별 세부 교육 내용, 학년별 시수 등을 명시하고 있음.⁶⁾

□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체육과)”에서는 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및 조치 등의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활동 안전 관련 내용을 학교급·학년군에 따라 명시하고 있고⁷⁾, 교육부는 실제 체육수업 중에 실천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장 적용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실제 스포츠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⁸⁾,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사항에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참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장소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붙임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참조

7) 붙임 2. “체육과 교육과정” 참조

8)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현장의 일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과 교육환경의 불균형, 제도적 지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특히 비전공 교사나 초임 교사의 경우 체육수업 내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 인식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기자재 점검의 부실, 응급처치 장비 및 훈련된 인력의 부재 등 물리적 환경의 제약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안전 지침이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원칙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진주, 학교 체육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과 통섭 2025 제8권 제4호, p23).

사항을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스포츠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과는 별도로 「학교체육 진흥법」에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는데, 동법 개정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유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는 개정 법률안에 제시된 스포츠안전교육과 현행 학교안전법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활동 안전 관련 내용과의 중복성·차별성·구체성·실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 시도교육청 검토의견 >

○ 인천교육청, 울산교육청: 신중검토(현행유지)

- 이미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률 및 고시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내용 추가 시 학교 현장 혼선 우려(제6조)

2.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수영장 추가(제7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예시에 수영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u>체육관</u>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 ----- --- <u>체육관, 수영장</u> ----- -----.

나. 검토의견

- ☐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체육과)”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특정 종목 활동을 명시하지 않고, 주제 중심의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한 후 학교 여건, 학생 선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신체활동 내용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교육9)’을 초등 정규 교육과정에

9) (체육·창의적체험활동, 연10시간 내외)됨(생존수영, 선생님께 전문적으로 배워요!, 2022.7.31., 교육부 보도자료)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다양한 수중 환경(강, 바다, 냇가, 수영장 등)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수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교육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0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됨.

* 대상학년 : (~2017)3~4학년 → (2018)3~5학년 → (2019)3~6학년 → (2020~2022)1~6학년

10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초등학교의 경우 수영 실기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체 학생수(2,345,488명¹⁰⁾) 대비 46.6%에 해당하는 1,091,860명이 수영 실기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실시 현황]

시도	실기교육 실시학생 수(명)
서울	119,218
부산	74,898
대구	40,743
인천	51,014
광주	49,127
대전	40,147
울산	28,056
세종	10,948
경기	251,794
강원	46,142
충북	39,271
충남	105,230
전북	26,525
전남	62,203
경북	58,414
경남	62,677
제주	25,453
계	1,091,860

자료 : 교육부[시도수합 자료('25.8.31.기준)]

□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상 학교¹¹⁾ 중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수는

10) 교육통계(KESS 교육통계서비스) 참조

11)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025년 8월 말 기준 전국 총 120개교로, 전국 20,307개교¹²⁾ 대비 0.6%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체육활동 중 수영 실기교육이 있으나 수영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인근 지자체 보유 공공수영장 또는 민간수영장 등을 이용한다고 설명하였음¹³⁾.

[학교의 수영장 보유 현황]

(단위: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52	4	10	1	2	1	1	-	13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	11	-	1	2	6	1	1	14	120

자료 : 교육부[시도수합 자료('25.8.31.기준)]

□ 현행법 제7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로 이미 수영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¹⁴⁾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12) 교육통계(KESS 교육통계서비스) 참조

13) 교육부는 수영 종목의 학교 스포츠 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의 수영장 보유 관련 자료는 미보유 상태라고 설명함.

14)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따라서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수영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상에서의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법 제도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향입법을 통한 상징적 효과와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로 수영장 포함에 이견 없다는 의견임.

[별표 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라켓볼장 7. 럭비풋볼장 8. 롤러스케이팅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 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 는 시설	
그 밖의 시설	1. 운동장	2. 체육관	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3. 체육시설 이용 요청시 협조 의무 부과(제7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장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u>체육관</u>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① ----- ----- --- <u>체육관, 수영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의 규율을 받음¹⁵⁾).

□ 동법들에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기간, 사용료 등을 규율하면서 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한편,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수가 전국 대비 0.6%에 불과하여, 체육활동 중 수영 실기교육이 있으나 수영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인근 지자체 보유 공공수영장 또는 민간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¹⁶⁾ 또한 상당 부분 학교에서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

15)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6)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10. 배드민턴장	19. 씨름장	28. 체력단련장	37. 핸드볼장	39. 그 밖에 교육 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궁도장	11. 볼링장	20. 아이스하키장	29. 체육도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 게이트볼장	12. 빙상장	21. 야구장	30. 체조장	39. 그 밖에 교육	
	4. 농구장	13. 사격장	22. 양궁장	31. 축구장	과정에 필요한	
	5. 당구장	14. 세팍타크로장	23. 역도장	32. 카누장	운동 종목의	
	6. 라켓볼장	15. 수영장	24. 에어로빅장	33. 탁구장	시설로서 교육	
	7. 럭비풋볼장	16. 스쿼시장	25. 요트장	34. 테니스장	부장관이 정하	
	8. 롤러스케이트장	17. 승마장	26. 육상장	35. 펜싱장	는 시설	
	9. 배구장	18. 썰매장	27. 조정장	36. 하키장		
그 밖의 시설	1. 운동장	2. 체육관	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규율함과 동시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동법의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¹⁷⁾, 국유재산인 체육시설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와 달리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국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은 공유재산의 특례를 제한시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장이 스포츠안전교육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용의 범위가 불명확해 보이므로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⁸⁾.
- 교육부는 학교의 중앙·지역사회 체육시설 이용의 구체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되, 여러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스포츠안전교육의 실시 근거·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안전교육에 한해 체육시설 이용을 협조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므로 ‘스포츠안전교육’ 용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일부 수정 의견임.

18)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외의 개별법에서도 공유재산의 사용 대가의 감면,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 적용하기 어렵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특례 규정이 다른 법률에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심사중인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8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34호)].

4.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바¹⁹⁾, 개정안과 관련된 하위 법령의 정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부칙의 경우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1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붙임 1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	유 치 원	13	10	8	5	5	6	2	2
	초 등 학 교	12	11	8	5	5	6	2	2
	중 학 교	10	10	10	6	4	6	3	2
	고 등 학 교	10	10	10	7	3	6	3	2
횟수		학 기 당 2 회 이 상	학 기 당 3 회 이 상	학 기 당 2 회 이 상	학 기 당 2 회 이 상		학 기 당 2 회 이 상	학 기 당 1 회 이 상	학 기 당 1 회 이 상

※ 생활안전교육에 신체활동 안전 포함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일부 발췌)

□ 교육 내용

○ 생활안전교육

- 초등학교: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활동
- 중학교: 실험·실습실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 고등학교: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및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 교육 방법

-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붙임 2 -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1] 일부 발췌)

[초등학교 3~4학년]

(1) 운동

(가) 성취기준 해설(발췌)

- [4체01-02]는 체력 증진을 위한 기본 운동 방법과 절차를 체험하며 자신의 신체 특성과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의 단계별 목적과 주안점을 파악하면서 운동 방법과 절차를 익히고, 자신의 신체 특성과 체력 수준에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시도하도록 한다.
- [4체01-05]는 기본 체력운동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체격, 체형, 체력 등 개인마다 다른 신체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발췌)

- 3~4학년군 운동 영역 지식에 관한 이해력은 운동과 건강 관련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운동 및 건강 활동 수행 능력과 태도는 건강과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및 건강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체크리스트, 개인일지, 운동 기능 검사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3~4학년군 운동 영역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인 안전·건강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기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스포츠

(가) 성취기준 해설(발췌)

- [4체02-10]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체육 시설, 자연환경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되,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태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5~6학년]

(1) 운동

(가) 성취기준 해설(발췌)

- [6체01-04]는 운동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생활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운동 시설이나 용·기구, 지상·수상·빙상 등의 다양한 운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생활 습관(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및 자연 환경을 탐색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한다.
- [6체01-06]은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개인별 차이를 공감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특성이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를 공감하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발췌)

- 체력 운동에서는 체력 측정 결과 자체보다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적합한 체력 운동을 선정하고 계획하여 안전하게 실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건강 활동은 학습자가 운동이나 건강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 발달의 차이를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태도를 평가한다.

(2) 스포츠

(가) 성취기준 해설(발췌)

- [6체02-09]는 생활환경형, 자연환경형 스포츠의 활동 방법과 기본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생활환경형, 자연환경형 스포츠를 변형한 게임이나 뉴스포츠 수준의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 방법을 파악하고 스포츠 환경에 적합한 활동의 선정과 장비 사용,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활동과 정리 등 생태형 스포츠의 기본 활동 방법과 전략을 파악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발췌)

- 스포츠 영역에서는 교내외 체육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3) 표현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표현 유형별 의미와 특징을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언어와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다. 표현 유형별 움직임 기술의 응용 동작은 기본 및 복합 움직임 기술을 표현 유형별 동작에 맞게 연결하되, 다양한 표현 동작을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별 협력 수업을 통해 표현 동작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동작의 연결, 대형의 선택, 예술적 표현 방법 등 표현 동작과 구성 방법을 설계하며, 작품의 의도와 표현 동작의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모듈별 작품 구성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중학교 1~3학년]

(1) 운동

(가) 성취기준 해설(발췌)

- [9체01-06]은 운동 처방 원리에 따라 자신의 신체 조건이나 체력에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실천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의 체격과 체력 발달 수준 검사, 운동 처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내용 설계, 실행, 평가 단계에 맞춰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실천하도록 한다.
- [9체01-11]은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계획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양성평등 및 성 건강, 생활 안전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자신과 타인, 집단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 [9체01-14]는 건강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사회 전체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타인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체력 운동은 다양한 체력 증진과 관리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여 적합한 운동 방법을 개인 또는 모둠별로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건강 활동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 증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 사회적 쟁점과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하며 건강 관련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는 태도를 학습하도록 한다.

(2) 스포츠

- [9체02-03]은 동작형 스포츠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과 팀의 경기 능력, 시설 및 용·기구 등을 파악하여 경기 상황에 맞게 경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동작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동작의 완성도에 중점을 두고, 경기 과정에서 공중 동작, 착지 중 낙상 등 운동으로 인한 손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체02-06]은 기록형 스포츠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상대 선수와 팀의 경기 능력, 시설 및 용·기구, 기후 조건 등을 파악하여 경기 상황에 맞게 경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기록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기록 향상에 중점을 두고, 경기 과정에서 질주나 착지 중 낙상, 특정 근육의 집중적인 사용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체02-09]는 투기형 스포츠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상대 선수와 팀의 경기 능력, 시설 및 용·기구 등을 파악하여 공격과 방어에 적합한 경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투기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상대의 기술에 맞서 겨루는 데 중점을 두고, 경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타격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체02-12]는 영역형 스포츠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공격 및 수비 전략을 선수와 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경기 상황에서 팀원과 상호작용하며 상대의 영역에 침범하여 득점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영역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팀의 전략을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며, 경기 과정에서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나 충돌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채02-15]는 필드형 스포츠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공격 및 수비 전략을 선수와 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실제 경기 상황에서 팀원과 상호작용하며 공을 던지고 받거나 타격하여 득점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필드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공격과 수비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며, 경기 과정에서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나 용·기구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채02-18]은 네트형 스포츠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단식과 복식, 공격 및 수비 전환 시기 등의 경기 전략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경기 상황에서 상대가 공을 받아넘기지 못하는 경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네트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팀원과 호흡하여 공격과 수비를 빠르게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며, 경기 과정에서 구성원이나 용·기구와의 충돌, 점프와 착지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채02-21]은 생활환경형 스포츠의 활동 방법을 이해하고 활동 상황에서 생활환경 조건을 고려한 활동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가정, 집 주변, 지역사회 등의 생활환경에서 활동하며 공간, 시설 등의 환경 조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활환경형 스포츠 실천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적응, 환경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 [9채02-24]는 자연환경형 스포츠의 활동 방법을 이해하고 활동 상황에서 자연환경과 생태 문화를 고려한 활동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산, 강이나 바다, 하늘 등의 자연환경에서 활동하며 날씨, 장비 등의 환경 조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연환경형 스포츠 실천 과정에서 기후나 자연환경의 변화, 용·기구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운동 손상 없이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기술형 스포츠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수준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개인 또는 모둠별로 수준별, 맞춤형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략형 스포츠에서는 팀의 공동 목표를 구성원과 협업하며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태형 스포츠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을 활용

한 실생활 실천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스포츠 유형별 문화적(국가, 인종, 성별, 연령, 환경 등) 차이와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인간과 생태계가 상호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스포츠 영역에서는 교내외 체육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3) 표현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스포츠 표현에서는 동작 습득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독창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구성하며, 용·기구 안전에 유의한다. 전통 표현에서는 여러 국가나 민족, 지역에서 전통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 외에 보기, 읽기 등의 간접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대 표현에서는 정형화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모둠별 창작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현 전반에 대한 직업군을 안내한다.

[고등학교 체육 1]

(1) 건강 관리

(가) 성취기준 해설

- [12체육1-01-03] 질병 예방, 영양 균형, 약물 오남용 및 음주, 흡연 예방, 운동 등 건강 관리 활동과 생활 안전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습득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건강 관리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 관리와 안전 요소는 안전한 건강 관리와 안전교육 두 가지 측면의 교수·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의 실천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운동의 생활화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 전략형 스포츠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전략형 스포츠 영역에서는 스포츠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평생 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 학생, 느린 학습자, 신체활동에 소극적인 학습자 등 다양한 학습자 및 학교 여건과 교내외 체육 활동에서의 안전 수칙을 고려한다.

(3) 생태형 스포츠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생태형 스포츠 영역에서는 여가 스포츠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평생 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 학생, 느린 학습자, 신체활동에 소극적인 학습자 등 다양한 학습자 및 학교 여건과 교내외 체육 활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고려한다.

[고등학교 체육 2]

(1) 체력 증진

(가) 성취기준 해설

- [12체육2-01-03] 체력 증진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골절, 근육과 건 좌상, 염좌, 타박상 등 신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체력 증진 영역은 다른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체력 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신체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2) 기술형 스포츠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기술형 스포츠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충분히 인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3) 표현 활동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동작을 익히고 신체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작품을 창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공연 활동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